

제24조중 “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”를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”로 하고, “동법 제26조”를 “동법 제32조”로 한다.

제26조중 “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”를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3647호(1999.7.31)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2항의 초과현원중 2002년 7월 31일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6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제3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34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3867호(2001.6.15)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초과현원중 2002년 7월 31일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6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제2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 현재 직급별·직렬별 초과현원 234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17 |
|----------|-----|

2003년 2월 일
문화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월 28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29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(2003.2.17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기호 기획관리실장)

가. 개정이유

◦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중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